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414 제출연월일: 2017. 11. 10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 및 「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」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입장료·사용료 조항을 적용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를 개정·정비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치법규(조례)의 시설 사용료를 울산광역시 야영(캠핑)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
 - 「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」 제36조에 준용 하여 중구 야영시설의 시설 사용료를 결정한다.(별표 1)
- 나. 시설사용료의 반환 조항 신설(안 제3조의2)
- 다. 캠핑장 시설사용료 면제 조항을 전면 개정(안 제5조)

3. 근거법규

- 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」 제36조
- 4. 개정조례안 및 신・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- 5. 참고사항
 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없음
 - 나. 및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 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해당없음
 - 라. 입법예고: 2017. 10. 10. ~ 10. 31.(의견없음)

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712호

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"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"를 "울산광역시 중구 캠핑 장 관리 및 운영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입화산 등에 위치한 캠핑장 관리·운영에 관하여"를 "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"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"야영데크"를 "야영데크, 카라반,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관리·운영하는"을 "관리 및 운영하는"으로, "관리·운영하는 자(법인·단체"를 "관리 및 운영하는 자(법인과 단체"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시설사용료"를 "별표 1의 시설사용료"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시설사용료의 반환)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- 1.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
- 2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
- ②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5조(시설사용료 감면)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- 1. 전액감면
 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
 - 나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2. 100분의 30 감면
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 나.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1급~3급 장애인
 -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라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
 - 마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 전유공자
 - 바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주유공 자
 - 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 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 - 아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 록된 특수임무유공자
 - 자.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 - 3. 100분의 20 감면: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

람

- 제8조제1항 전단 중 "관리·운영"을 "관리 및 운영"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. 천재지변,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

제9조 중 "대여 할"을 "대여할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변상하여야"를 "변상하여야 하며, 손해배상액은 원상복 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"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관리·운영"을 "관리 및 운영"으로, "에게"를 "에"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"관리 운영하여야"를 "관리 및 운영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원상 복구하여야하며,복구"를 "원상복구하여야 하며, 원상복구"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관리 · 운영"을 "관리 및 운영"으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적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」,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7조 중 "관하여 필요"를 "필요"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표 1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별지>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

사 용 자		생	년 월	일			
사용목적							
사용자 주소				전	화번호		
사용기간 및	20	년	월	일	시 분	-부터	
시간	20	년	월	일	시 분	까지	
사용시설							
감 면 액		원(시설	실사용토	문의	%)		
감면신청							
사 유							
구비서류	○ 100분의 30: 증 ¹ 서,	의 후 명서, 신분 있는 보증,	공익 추천서 증, 주' 증명서	행사크 (기관 민등록	로 인정된 장 직인 등본 등	틴 문서 날인), 가 ^፭ 등 감액사유	주관계 증명 구를 확인할

「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날인 또는 서명)

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

【별표 1】

캠핑장 시설사용료(제3조 관련)

(단위 : 원)

시 설 명	구 분	사 용	성수기 (7위e	비수	= 7]	비고
기설병	(정원 및 면적)	기 준	(7월~8 월)	주말· 공휴일	평 일	н ж
오토캠핑	1개소	1개소/1일 (1박기준)	30,000	25,000	20,000	전기사용 료 포함
야영데크	1개소	1개소/1일 (1박기준)	20,000	20,000	15,000	n,
카라반	6인 용	1개소/1일 (1박기준)	150,000	130,000	110,00 0	n

○ 1일 사용시간

- 당일 14:00 ~ 다음날 11:00 기준이며,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

-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: 사용료의 20%, 2시간초과 4시간까지

: 사용료의 40%,

4시간 초과 : 1일 사용료 추가

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(제3조의2 관련)

구 분	반환기준	비고
1)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		
-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	- 사용료 전액 반환	
- 사용예정일 2~4일 전에 취소	- 사용료의 90% 반환	
-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	- 사용료의 80% 반환	
-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- 사용료의 70% 반환	
2) 예약·선납된 경우로서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 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	- 취소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	

※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사용 당일 사용예정시간(11:00)까지 취소하는 경우 당일 취소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	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<u>입화산 등에 위치한 캠핑</u> <u>장 관리·운영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조(목적)
1. · 2. (생 략) 3."시설"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, <u>야영데크</u>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 다.	 1.·2. (현행과 같음) 3 <u>야영데크, 카라반,</u>
4. (생 략) 5. "관리자"란 시설을 <u>관리·운</u> <u>영하는</u>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또 는 위탁받아 <u>관리·운영하는</u> <u>자(법인·단체</u> 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 6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 5 관리 및 운 영하는 관리 및 운영하는 자 (법인과 단체 6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	<u>하는 경우</u>
	<u>2. 100분의 30 감면</u>
	<u>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</u>
	<u>따른 수급자</u>
	나.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1
	<u>급~3급 장애인</u>
	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
	원에 관한법률 시행령」제86조
	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	<u>당하는 자</u>
	라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
	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
	<u>자</u>
	마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
	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
	된 참전유공자
	<u>바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</u>
	<u>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</u>
	<u>주유공자</u>
	사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
	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	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	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	아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다시	제9조(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다시
대여 금지) 캠핑장 시설에 대한	대여 금지)
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	
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	<u>대여할</u>
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<u>대여 할</u> 수	
없다.	
제11조(변상책임) ① 사용자가 고	제11조(변상책임) ①
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	<u>변상</u>
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<u>변</u>	하여야 하며, 손해배상액은 원상
<u>상하여야</u> 한다.	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위탁관리) ① 구청장은 캠	제12조(위탁관리) ①
핑장의 효율적인 <u>관리·운영</u> 을	관리 및 운영
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	
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	
체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 <u>에게</u>	<u>에</u>
위탁할 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수탁자의 의무)①·② (생	제13조(수탁자의 의무)①·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수탁자는 재해예방 대책을	3
수립하여 <u>관리 운영하여야</u> 한다.	<u>관리 및 운영하여야</u>
	

현 행	개 정 안
① · 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	(U (U O T E E)
⑥ 수탁자가 고의, 과실 또는 선	6
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	
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	
손하였을 경우에는 <u>원상 복구하</u>	원상복
여야하며,복구가 불가능할 경우	구하여야 하며, 원상복구
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	
제14조(지도감독) ① 수탁자는 캠	제14조(지도감독) ①
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	
연 1회 이상 구청장에게 보고하	
여야 하며, 구청장은 필요한 경	
우 <u>관리·운영</u> 에 관한 전반적인	관리 및 운영
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	
를 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준용) 시설사용료 징수 및	제16조(적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것
캠핑장의 관리・운영 등에 관하	외에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
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	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
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	<u>항은「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</u>
관리 조례」및 「울산광역시 중구	녹지 등에 관한 조례」,「울산광
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	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조례」를 준용한다.	및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
	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
	른다.

현	행			개	정	안	
제17조(시행규칙) 이	조례의	시행	제17조(/	시행규	칙) -		
에 <u>관하여 필요</u> 한	사항은	규칙	- <u>필</u> 요	<u>_</u>			
으로 정한다.							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[별지 제1호서식]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
	사 용 자 생 년 월 일
	사용목적
	사용자 주소 전화번호
	사용기간 및 20 년 월 일 시 분부터
	시간 20 년 월 일 시 분까지
	사용시설
	감면 액 원(시설사용료의 %)
	간면신정 사 유
	○ 전액감면: 증명서, 행사 주관(주최)부서에서 캠핑경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○ 100분의 30: 증명서, 추천서(기관장 직인날인) 가족관계 증명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○ 100분의 20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
	「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.
	년 월 일
	신청인 (날인 또는 서명)
	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

	현		7	행				개	정	}	안		
[별표	1]						[별표	1]					
캠꼭	용장 시	설사용	료(저]3조	관련)	캠꼬	핑장 시	설사용	-료(저]3조	관련)
			ı	(ţ	단위 :	원)					(단위 :	원)
시설명	구 분 (정원 및 면적)	사용기준	성수기 (7월~8월)	비 <i>=</i> 주말· 공휴일	수 기 평일	н]	시설명	구 분 (정원 및 면적)	사용기준	성수기 (7월~8월)	비 - 주말· 공휴일	수 기 평일	н]
<u>오토캠핑</u>	1개소	1개소/1일 (1박기준)	20,000	20,000	15,000	전기 료 :	<u>오토캠핑</u>	1개소	1개소/1일 (1박기준)	30,000	25,000	20,000	전 <i>7</i> 료
<u>야영데크</u>	<u>4~5인용</u> (<u>3×4m,</u> 12㎡)	1개소/1일 (1박기준)	15,000	15,000	10,000	,	<u>야영테크</u>	<u>1개소</u>	1개소/1일 (1박기준)	20,000	20,000	15,000	
<u><신</u> 규>						<u>카라반</u>	<u>6인용</u>	<u>1개소/1일</u> (1박기준)	150,000	130,000	110,000		
<u>텐트임</u> <u>대</u>	<u>4~5인용</u>	<u>1개</u>		<u>10,000</u> 데크 료 기				<삭 제>					
<u>야외공</u> <u>연장</u>	48 m² (6×8m)	<u>4시간/1회</u> <u>당</u>		50,000			<삭 제>						
0 10	사용시간 다이 14:0	10 ~ 다음날	날 11:0	0 기준0	며, 퇴실	실시간	• 1일 -	사용시간 당일 14:0		날 11:00) 기준이	l며, 퇴실	실시긴
-	과 시 추가 <u>1시간 초</u> 고	요금 징수					-	<u>1시간 초</u> 고	요금 징수 <u> 2시간까지</u> 사용료의				간초회
- - • <u>쓰리</u> - <u>:</u>	과 시 추가 <u>1시간 초</u> 고	요금 징수 바 2시간까 00원, 4시 급(1박 기 20ℓ) 1징	<u>간 이후</u> 준)				- <u>〈삭</u> 자	<u>1시간 초</u> 고 <u>시간까지 :</u> <u>추가</u>	· 2시간까지				<u>간초</u> 3
- - • <u>쓰리</u> - <u>:</u>	과 시 추가 1시간 초고 까지 5,00 까지 5,00 비기봉투 지 일반용봉투(음식물전용통	요금 징수 바 2시간까 00원, 4시 급(1박 기 20ℓ) 1징	<u>간 이후</u> 준)				<u>〈삭 자</u>	<u>1시간 초</u> 고 <u>시간까지 :</u> <u>추가</u>	· 2시간까지				<u>간초</u> 3
[肩五 - 張 - 조 - 조 - 조 - 조 - 조 - 조 - 조 - 조 - 조 - 조	과 시 추가 1시간 초고 까지 5,00 까지 5,00 비기봉투 지 일반용봉투(음식물전용통	요금 징수 바 2시간까: 00원, 4시 급(1박 기 20ℓ) 1정 봉투(10ℓ)	<u>준)</u> (<u></u> 1장	1일 사용	용료 추기	<u>''</u>	<u>⟨み</u> ⊼	1시간 초고 시간까지 : 추가	· 2시간까지 사용료의	40%, 4	시간 초	과 : 1일	<u>간초</u> 길 실 사
[肩五 - 張 - 조	과 시 추가 1시간 초고 까지 5.00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요금 징수 바 2시간까: 00원, 4시 급(1박 기 20 <i>ℓ</i>) 1정 봉투(10 <i>ℓ</i>)	<u>준)</u> (<u></u> 1장	1일 사용	용료 추기	<u>''</u>	<u>⟨み</u> ⊼	1시간 초고 시간까지 : 추가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2시간까지 사용료의 사용료	40%, 4	시간 초	과 : 1일	<u>간초</u> 길 실 사
[肩五 - 張 - 조	파 시 추가 1시간 초고 까지 5.00 #기봉투 지 일반용봉투(음식물전용통 된 2] 당장 시설	요금 징수 바 2시간까: 00원, 4시 급(1박 기 20 <i>ℓ</i>) 1정 봉투(10 <i>ℓ</i>)	간 이후 준) : 1장 - 반환 ·련)	1일 사용	(제3조	<u>''</u>	(4 本 [별3 캠3	1시간 초고 시간까지 : 추가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2시간까지 사용료의 사용료	<u>40%, 4</u> 반환 : <u></u> 한현)	시간 초	과 : 1일	<u>간초</u> 길 실 사

근거 법규

1. 「관광진흥법」

제67조(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)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, 그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,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있다.

-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·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다. <개정 2008.6.5.>
-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·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·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.

2. 「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」

제36조(입장료·사용료 <개정 2011·10·13>)법 제40조에 따라 도시공원(이하 "공원"이라 한다)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·사용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별표 2에서 범위로 정하는 입장료·사용료는 원가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·1·8, 2011·10·13, 2016·12·29, 2017·6·1〉 [전문개정 2008·1·10]